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작성책임자	팀장 윤승환	팀장 임경균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2010년 1월 16일	2010년 9월 30일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정정 전 1) 참고	정정 후 1) 참고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정정 전 1) 참고	정정 후 1) 참고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정정 전 2) 참고	정정 후 2) 참고
5. 투자운용인력	정정 전 3) 참고	정정 후 3) 참고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클래스 생성		
나. 종류형 구조	추가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정정 전 4)	정정 후 4)
나. 투자제한	정정 전 5)	정정 후 5)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가 가. 매입 (2) 종류별 매입 자격	추가	종류 C4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3) 환매수수료	종류 C1/C2/C3/C4 /C-e/C-W/C-F	종류 C1/C-e/C-W/C-F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장외파생상품	삭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정정 전 6)	정정 후 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정정 전 7)	정정 후 7)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22 기, 23 기	23 기, 24 기
4.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	정정 전 8)	정정 후 8)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정정 전 9)	정정 후 9)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 해지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00 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항 단서에 따라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

정정 전 1)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94920)								
종류형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4070	19053	94921	94922	94923	94924	94925	94926	94927

정정 후 1)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94920)									
종류형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4070	19053	94921	94922	94923	94924	96567	94925	94926	94927

정정 전 2)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06. 01. 17.	최초 설정
2008. 09. 11.	운용전문인력 변경(이복상→주식운영팀)
2008. 09. 24.	투자신탁명칭 변경(마이애셋징기스칸주식형투자신탁→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채권 및 어음 투자등급(신용등급) 상향조정, 판매회사 보수 인하
2008. 10. 22.	장기주식형 적립식 세제혜택 적용
2009. 03. 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SC 제일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2009. 03. 30.	운용전문인력 변경[주식운영팀(한상수, 김우식)→한상수]
2009. 05.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투자신탁명칭 변경 (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09. 05. 25.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집예정금액(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 변경
2010. 01. 11.	-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및 일부 내용 업데이트

정정 후 2)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06. 01. 17.	최초 설정
2008. 09. 11.	운용전문인력 변경(이복상→주식운용팀)
2008. 09. 24.	투자신탁명칭 변경(마이애셋징기스칸주식형투자신탁→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채권 및 어음 투자등급(신용등급) 상향조정, 판매회사 보수 인하
2008. 10. 22.	장기주식형 적립식 세제혜택 적용
2009. 03. 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SC 제일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2009. 03. 30.	운용전문인력 변경[주식운용팀(한상수, 김우식)→한상수]
2009. 05.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투자신탁명칭 변경 (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09. 05. 25.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집예정금액(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 변경
2010. 01. 11.	-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및 일부 내용 업데이트
2010. 10. 25	판매보수 인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영

정정 전 3)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한상수	1962	자산운용본부장	13 개	2,210 억	- 2005~2006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2005~1990 대한투자신탁운용 혼합형운용팀장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투자운용 인력(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주 2) 기준일: 2010.01.16.

정정 후 3)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한상수	1962년	자산운용본부장	12 개	2,678 억	- 2005~2006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2005~1990 대한투자신탁운용 혼합형운용팀장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투자운용 인력(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주 2) 기준일: 2010.09.30.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억원)
1 개	69 억

정정 전 4)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권)	60%이상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유가증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
2. 채무증권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어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기업어음증권(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주권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 상품	15%이하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권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6.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7. 수익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1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
	30%이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환매조건부매도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10. 신탁업자 고유 재산 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대출은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의 예치는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정정 후 4)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7.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30%이하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환매조건부매도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10.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대출은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p>◆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 각 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정정 전 5)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100%까지 투자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증가액의 총액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액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가액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정정 후 5)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해지 시
총 보수	1.750	1.550	2.250	2.100	1.960	1.830	1.950	0.750	0.780		
기타비용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발생 시
총 보수·비용비율	1.765	1.565	2.265	2.115	1.975	1.845	1.965	0.765	0.795		
증권 거래비용	1.065	-	0.881	-	-	-	1.105	-	-	-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주 3) 증권 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 외에 증권 일괄 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가액총액의 1 만분의 4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5)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A-e / C2 / C3 / C4 / C-W / C-F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 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 원)

구분	가입 시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50	230	617	1,045	2,314
종류 A-e	50	210	553	932	2,058
종류 C1	-	232	732	1,283	2,920
종류 C2	-	217	683	1,198	2,727
종류 C3	-	202	638	1,119	2,546
종류 C4	-	189	596	1,045	2,379
종류 C-e	-	201	635	1,113	2,533
종류 C-W	-	78	247	433	986
종류 C-F	-	81	257	450	1,025

정정 후 6)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차 (최초가입)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총보수 (기타비용 제외)	연 2.25%	연 2.07%	연 1.93%	연 1.81%	연 1.71%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매 3 개월 후 급 및 투자신탁 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 시
판매회사 보수	1.000	0.800	1.500	1.320	1.180	1.060	0.960	주 6)	-	0.030	
신탁업자 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총 보수	1.750	1.550	2.250	2.070	1.930	1.810	1.710	주 6)	0.750	0.780	

기타비용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발생 시
총 보수·비용비율	1.765	1.565	2.265	2.085	1.945	1.825	1.725	주 6)	0.765	0.795	
증권 거래비용	1.065	-	0.881	-	-	-	-	1.105	-	-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주 3) 증권 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 외에 증권 일괄 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가액총액의 1 만분의 4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5)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A-e / C3 / C4 / C5 / C-W / C-F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C-e의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기간	보수(%)
2010.10.25 ~ 2011.10.24	연 1.140
2011.10.25 ~ 2012.10.24	연 1.080
2012.10.25 ~ 2013.10.24	연 1.020
2013.10.25 ~	연 0.960

<1,000 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 원)

구분	가입 시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50	230	617	1,045	2,314
종류 A-e	50	210	553	932	2,058
종류 C1	-	232	662	1,064	2,156
종류 C-e	-	195	616	1,079	2,456
종류 C-W	-	78	247	433	986
종류 C-F	-	81	257	450	1,025

정정 전 7)

회사명	마이애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6층 (연락처 : 02-3774-6114, www.mai.co.kr)
회사 연혁	-1987.11. 법인 설립 -1999.12. 자산운용업 등록,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으로 상호변경 -2000.06. 투자일임업 등록 -2007.06. 유병덕 대표이사 취임, 마이애셋자산운용(주)으로 상호변경
자본금	157.7 억
주요 주주현황	김은숙(17.51%), 한별텔레콤(8.08%), 우리투자증권(7.29%)

정정 후 7)

회사명	마이애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6층 (연락처 : 02-3774-6114, www.mai.co.kr)
회사 연혁	-1987.11. 법인 설립 -1999.12. 자산운용업 등록,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으로 상호변경

	-2000.06. 투자일임업 등록 -2007.06. 유병덕 대표이사 취임, 마이애셋자산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10.06. 유병덕 대표이사 재취임
자본금	157.7 억
주요 주주현황	김은숙(17.89%), 우리투자증권(7.29%)

정정 전 8)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가 181 외환은행 본점 23 층 02-729-8950
회사연혁 등	2003. 04. 01. 설립

정정 후 8)

회사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번지 한외빌딩 9 층 02-6714-4615
회사연혁 등	2003. 04. 01. 설립

정정 전 9)

회사명	KIS 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연락처	02-3215-1400	02-298-3900	02-399-3350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npricing.co.kr	www.koreabp.com

정정 후 9)

회사명	KIS 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연락처	02-3215-1400	02-298-3900	02-399-3350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npricing.co.kr	www.koreaap.com